

제337회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5년10월28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감사원 소관
 - 라. 헌법재판소 소관
 - 마. 대법원 소관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법무부 소관
 - 나. 대법원 소관
3.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전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2.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3.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안
4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5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5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5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7.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4. 사형폐지에 관한 공청회 개최의 건
65.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공청회 개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예산안(계속)5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다. 감사원 소관	
라. 헌법재판소 소관	
마. 대법원 소관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가. 법무부 소관	
나. 대법원 소관	
○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7
64. 사형폐지에 관한 공청회 개최의 건	7
65. 사법시험 준치에 관한 공청회 개최의 건	7
3.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이한성 · 김태원 · 정희수 · 김성곤 · 염동열 · 김상훈 · 윤명희 · 정수성 · 신경림 · 김진태 의원 발의)(계속)	10
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 · 김용익 · 최동익 · 진성준 · 윤관석 · 최민희 · 이상직 · 강동원 · 진선미 · 이개호 · 김성곤 · 김현미 · 박남춘 · 정청래 · 박민수 · 김상희 · 안민석 · 임수경 · 원혜영 · 정성호 의원 발의)(계속)	10
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1
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 · 박수현 · 김영환 · 이종걸 · 서영교 · 이원욱 · 양승조 · 노영민 · 김승남 · 문병호 · 박완주 · 최원식 · 민병두 · 노웅래 · 이석현 · 김동철 · 박병석 의원 발의)(계속)	11
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 · 원혜영 · 윤명희 · 김재경 · 심윤조 · 권은희 · 김성찬 · 민병주 · 박혜자 · 나성린 · 이자스민 의원 발의)(계속)	11
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 · 박수현 · 김영환 · 이종걸 · 서영교 · 최원식 · 이원욱 · 양승조 · 노영민 · 김승남 · 문병호 · 박완주 · 민병두 · 이석현 · 노웅래 · 김동철 · 박병석 의원 발의)(계속)	11
○ 정책질의	12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16
1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 의원 대표발의)(홍문종 · 유승우 · 이한성 · 이만우 · 손인춘 · 홍지만 · 김세연 · 이우현 · 이현승 · 유일호 · 이재영 의원 발의)	20
1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 · 강석훈 · 안홍준 · 송영근 · 김명연 · 홍지만 · 유의동 · 김한표 · 이재영 · 김광립 · 박상은 의원 발의)	21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 · 주승용 · 강기정 · 서영교 · 양승조 · 유성엽 · 김춘진 · 부좌현 · 김영록 · 최규성 · 박민수 · 김성곤 의원 발의)	21
1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 · 박대동 · 박명재 · 최봉홍 · 박창식 · 이노근 · 김정록 · 문정림 · 이만우 · 박맹우 의원 발의)	21
15.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 · 이개호 · 임수경 · 이한성 · 박민수 · 김우남 · 전순옥 · 민홍철 · 설훈 · 김종태 의원 발의)	21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정호준 · 이찬열 · 이개호 · 박주선 · 진성준 · 박홍근 · 김승남 · 김관영 · 이춘석 · 신경민 · 김윤덕 의원 발의)	21
1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호 의원 대표발의)(이상호 · 이목희 · 김기준 · 박홍근 · 이상직 · 송호창 · 인재근 · 김광진 · 이개호 · 김성곤 · 진선미 · 박민수 · 윤관석 의원 발의)	21
1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 · 조정식 · 윤관석 · 양승조 · 배기운 · 이종걸 · 최민희 · 김성주 · 유성엽 · 김광진 의원 발의)	21
1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 · 박대동 · 박명재 · 최봉홍 · 박창	

식 · 이노근 · 김정록 · 문정림 · 이만우 · 박맹우 · 김현숙 의원 발의)	21
20.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 · 김윤덕 · 김재운 · 민현주 · 신경민 · 유성엽 · 김상희 · 윤관석 · 이석기 · 이인영 · 인재근 · 장하나 · 최민희 · 홍종학 의원 발의)	21
2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1
2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1
2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1
2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1
2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1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1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1
2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1
29.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30.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31.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32.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33.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31
3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31
35.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31
3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31
3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 · 최원식 · 은수미 · 진성준 · 김용익 · 김진표 · 원혜영 · 한정애 · 추미애 · 배기운 · 이찬열 · 장하나 · 최민희 · 한명숙 · 진선미 · 임수경 · 전순옥 · 김재운 · 박남춘 · 안규백 · 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34
3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 · 박병석 · 김기준 · 박민수 · 강기정 · 이원욱 · 정세균 · 홍익표 · 은수미 · 김성주 · 이미경 · 임수경 · 박주선 · 권성동 의원 발의)(계속)	34
3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 의원 대표발의)(백군기 · 김광진 · 윤후덕 · 황주홍 · 김세연 · 송영근 · 우원식 · 이인영 · 안규백 · 김춘진 · 한정애 · 權垠希 의원 발의)	35
4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 · 황주홍 · 이종훈 · 서용교 · 나성린 · 양창영 · 이완영 · 최봉홍 · 김상민 · 김종태 의원 발의)	35
41.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양창영 · 이철우 · 송영근 · 유승우 · 박주선 · 박홍근 · 김태흠 · 김윤덕 · 이한성 · 박남춘 · 문병호 · 김제식 · 김상훈 · 김학용 의원 발의)	35
42.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 · 이완영 · 양창영 · 이종훈 · 나성린 · 최봉홍 · 서용교 · 권성동 · 김상민 · 강석호 의원 발의)	35
43.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 · 나성린 · 양창영 · 최봉홍 · 서용교 · 김종태 · 이완영 · 이자스민 · 김상민 · 이종훈 · 한정애 · 김용남 · 심상정 · 이인영 · 권성동 의원 발의)	35
4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 · 김기준 · 박민수 · 이개호 · 이인영 · 이학영 · 장하나 · 정성호 · 최동익 · 한정애 의원 발의)	35
4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5
4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5
47.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5
4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5

4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5
5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35

(14시33분 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가. 법무부 소관

나. 법제처 소관

다. 감사원 소관

라. 헌법재판소 소관

마. 대법원 소관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법무부 소관

나. 대법원 소관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법무부 소관, 법제처 소관, 감사원 소관, 헌법재판소 소관, 대법원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법무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대법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장이신 이한성 위원께서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한성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한성입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3억 3840만 원을 감액하고 268억 72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5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31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수입에서 총 74억 8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에서 총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청년법제포럼 1100만 원, 창조경제 혁신센터 법률지원 5000만 원, 나홀로소송 법률지원 1억 원, 도미니카공화국 여성·아동범죄 예방 및 퇴치 지원 3000만 원,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교육비 및 수강료 1960만 원, 과학수사인프라 구축 사업의 연구용역비 등 4780만 원, 안전비리 등 민관유착사범 비리단속 5억 원, 범죄예방 및

층형 컨설팅 5000만 원, 아시아 교정시설 건축 실무자 회의 900만 원, 교정시설 연료비 1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법무부 및 특별감찰관 특수활동비 4억 100만 원과 특별감찰관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중재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58억 9850만 원,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구축에 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청사관리 용역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비 77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이코리아 고도화 35억 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출장소 임차료 10억 원,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4억 1700만 원, 검찰 직접 수사사건 호송장비 등 구입 29억 3000만 원, 특수기록관 전산시스템 개발 3억 8000만 원, 비연고지 단독 거주 검찰직원 지원 12억 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경비교도대 생활관 리모델링 16억 9800만 원, 수형자 심리상담·치료 프로그램 강사비 2억 2900만 원, 소년원생 수용 9억 1710만 원, 치료감호시설 특수경비원 채용 6억 480만 원, 법무·검찰공무원 신규 임용자 현장학습 1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는 교도작업 신규작업장 증설에 따른 운영비 등 31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경우 수입에서는 벌금수납액의 현실적 예측치를 반영하여 일반회계전입금 중 74억 8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에서 스마일센터의 신규 설치를 위하여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스마일센터를 계획대로 추가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등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 7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관하여는 인천지방검찰청의 독신자 숙소 신축 예산 1억 5000만 원의 증액의견을 제시하였고, 광주교도소의 이천에 따른 중전 부지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지역 및 재정당국과의 조속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제처 소관 예산안은 세계법제연구 지원사업에서 1150만 원, 자치법규입안지원사업

에서 5000만 원, 법제지원단 기본경비에서 2936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남북법제사업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0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법제지원사업 중 주요 법령번역감수 600만 원, 세계법제정보센터 콘텐츠 홍보 550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법규입안지원사업 중 광역자치단체 조례정비는 법제처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법제지원단 기본경비 중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자문 600만 원, 입법지원업무 연구보고서 발간 1468만 원, 의원입법지원 백서 발간 868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남북법제 연구용역 추가 실시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자치법규입안지원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 및 자치입법 역량강화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고 통합된 매뉴얼을 제공하도록 할 것과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세계법제정보는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외교부, 법제연구원 등이 구축하고 있는 외국법령정보제공 관련 시스템과 공동 이용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총 4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기본경비에서 840만 원, 감사활동경비에서 1억 600만 원, 총 1억 1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경비 중 밸런스힐링과정의 취지는 기존의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하여 달성하도록 하여 인건비 84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감사활동경비 중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위원회 운영 일반수용비 1000만 원과 발간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우수감사요원 해외연찬을 위한 국제화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특수활동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는 예산당국과 이를 편성·집행하는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방안을 검토할 것 등 총 3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홍보활동사업에서 3160만 원, 한국 헌법재판 연구자료 지원 사업에서 400만 원, 영문 헌법재판 판례집 발간 사업에서 2000만 원, 헌법재판연구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사업에서 3700만 원 등 총 926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선대리인 보수 등 지원 사업

에서 3200만 원, 세계헌법재판교류 사업에서 1억 5000만 원, 청소 및 시설관리 위탁사업비에서 3억 2000만 원 등 총 5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밖에 '통일헌법 기획연구 및 시리즈 발간' 사업을 '통일과정에서의 헌법적 쟁점연구'로 사업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헌법재판연구원의 청사 임차료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 등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754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억 원을 감액하고, 150억 4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8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등기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581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등기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81억 6400만 원을 증액하고 663억 4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81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법제도개선기금의 지출에서 2억 원을 감액하여 여유자금 운용 항목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면허료 및 수수료 90억 9300만 원,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663억 4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법원도서관 생활관레깅 발간사업 1억 원, 특수활동비 3000만 원, 개발도상국 사법역량 강화사업 5000만 원, 사법정책연구개선사업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사회복지무요원 경비 4억 8400만 원, 청소·시설관리 위탁사업비 125억 6500만 원, 국선변호료 지원사업 2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등기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511억 8300만 원, 토지매각대 70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등기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663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등기업무전산화사업 51억 6400만 원, 예비비 3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법제도개선기금의 지출에서 판결서 공개사업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금사용 자제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내용확인서 생략사유를 최소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비롯하여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 23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관하여는 대전전산정보센터 구축을 위하여 10억 원의 증액의견을 제

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4시44분)

○위원장 이상민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공청회 관련 일정 건입니다.

64. 사형폐지에 관한 공청회 개최의 건

65.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공청회 개최의 건

○위원장 이상민 우선 공청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국회법 제64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주요한 쟁점이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형폐지 관련 법안, 아마 형법 개정안 일 건데요, 그것은 11월 9일 오후 2시, 그리고 사법시험 존치 관련 법안은 11월 18일 오전 10시, 이렇게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양당 교섭단체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공청회 일정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보고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제가 19대 국회 들어서 4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데요, 법사위에서는 한 번도 예산결산심사를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예결산심사소위 심사보고서를 보니까요 법무부하고 특별감찰관은 4억 100만 원이 이유 없이 특활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감사원은 특활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8000만 원을 감액한다고 심사보고가 되어 있고 법무부하고 특별감찰관 특활비 4억 100만 원

은 아무 이유가 없고.

그런데 대법원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금사용 자제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내용확인서 생략사유를 최소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이래 놓고 특활비 삭감이 없습니다.

○전해철 위원 있어요.

○김도읍 위원 얼마 했습니까?

○소위원장 이한성 3000만 원.

○김도읍 위원 3000만 원이요? 이 보고에는 없는데요?

○소위원장 이한성 요약보고라서……

○김도읍 위원 요약보고라서 없습니까?

○소위원장 이한성 10페이지.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소위원장님이 보고하신 거니까 소위원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김도읍 위원 아닙니다. 지금 법무부 차관 나와 계시는데요, 4억 100만 원 특활비 감액을 하고, 지금 제가 보기에 특수활동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기관이 가장 많이 특활비가 감액되고 감사원, 그다음에 대법원이 가장 적게 감액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법무부는 이렇게 특활비가 4억 100만 원 감액되어도 업무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주현 특수활동비는 저희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서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마쳐서 정부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소위에서 드렸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소위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셔서 저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활동하는 데 반영할지 그런 걸 검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도읍 위원 법무부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4억 씩이나 삭감된 적 있었습니까, 상임위에서?

○법무부차관 김주현 2010년도 당시에 특활비 규모가 걱정된 것이냐를 한 번 논의하셔서 그때 약 한 10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 그 이후에 2011년, 2012년, 2013년 이렇게 계속해서 한 10% 정도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 5년 전에 비하면 많이 감액된 상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 감액된 부분을 실제 활동하는 데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김도읍 위원** 연차적으로 감액됨에 있어서 업무가 위축된다든지 업무가 부실화된다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주현** 그렇게 감액이 되니까 현실에서 쓰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지난해하고 그전 해에는 오히려 조금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2010년부터 약 20억 정도의 규모가 감액되었다가 지남해에는 조금 늘려 주신 건데 이 부분을 다시 조금 더 감액하는 부분이 되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도읍 위원** 우리가 국민들의 혈세를 아주 잘 써야 되고 알뜰하게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주요 수사기관이라든지 사정기관이라든지 감사원 같이 이런 대외활동에 필요한, 특수활동에 필요한 부처에서의 특수활동비 삭감은 자칫 잘못하면 세금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국가의 중추기능이 제 역할을 못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감사원장님.

○**감사원장 황찬현** 예.

○**김도읍 위원** 이번에 8000만 원 삭감됐더라고요.

○**감사원장 황찬현**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어떻습니까, 원장님?

○**감사원장 황찬현** 저희들 예산편성 됐던 추이를 죽 보면 10년 전인 2006년에는 42억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38억 5000을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더구나 저희들은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4년 연속 38억 5000으로 내부에서 아끼면서 동결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법사위에서 일부 삭감되어서, 저희들로서는 감사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증액하지 않고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 감사대상기관이 6만 개가 조금 넘고 또 감사활동 인력도 조금 늘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다소 저희들 활동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봐서 지금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읍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가재정은 저희들이 절약하고 해야 되지만 예산 조금 아끼려다가 중추기능이 자칫 제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잘 조화롭게 해결책이 나왔으

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님들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소위 위원인데도 어제 마지막 심의할 때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이게 지금 처음 보는 사안인데요.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

○**김진태 위원** 법원의 특수활동비가 얼마예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금년도에 처음으로 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3억이요? 3억에서 3000만 원 삭감으로 어제 소위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소위에서 10% 삭감됐습니다. 법사위 기관 중에 비율로는 가장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법관들한테 지급할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법원도 인원이 2만 명에 육박하고 전국 도처에 기관이 있기 때문에, 또 직무감찰이나 이런 활동을 감사원, 행정부에 의뢰해서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밀성이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 최소한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김진태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지급할 계획입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1인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러면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필요한 조사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수요에 맞춰서 집행합니다.

○**김진태 위원** 그런데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법원도 특수활동비가 필요해요, 재판기관이?

지금 특수활동비 가지고 온 정부 부처가 홍역을 치르고 예결위 차원에서 다시 논의하자, 필만들자 그리고 있는데 금년에는 법원이 새로 이것을 해 가지고 넣었다고요, 3억을?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2015년 예산에 들어 있던 것입니다. 2016년 예산은 동액으로 편성이 됐

는데 그것을 10% 감액한 것입니다.

○**김진태 위원** 언제부터 편성됐어요, 몇 년도부터?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2015년부터 편성됐습니다. 금년도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금년에 집행 중이고.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것을 같이 해서 3억을 또 내년에 신청했다 이런 얘가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요.

특수활동비의 요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기밀성, 발음도 정말 이상하고 그런데……

(웃음소리)

그것의 첫 번째 요건인데 법원에서 특수하게 활동할 일이 뭐가 있어요? 공개재판 하는 데 아니에요? 공판중심주의 아니에요? 그것 하는데 무슨 이것을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법무부에서는 소위에서 몇 % 감액된 겁니까?

감사원도 계산해 보세요. 몇 %씩 감액된 겁니까?

일단 액수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서 법원이 제일 적게 감액된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감사원장님, 몇 % 감액됐습니까?

○**감사원장 황찬현** 저희들은 2% 정도 됩니다.

○**김진태 위원** 2%요?

○**감사원장 황찬현** 예.

○**김진태 위원** 퍼센티지로 따지니까 또 그렇게 되네요?

○**감사원장 황찬현** 저희들은 예산 신청한 게 38억 5000이고 감액된 액수가 8000만 원입니다.

○**김진태 위원** 법무부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주현** 법무부도 2% 조금 못 되는 퍼센티지입니다.

○**김진태 위원** 하여튼 법원의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저는 안 맞는 것 같고요, 10%만 감액한 것도 좀더 감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답변 말씀드리면 법원도 삼권분립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직무감찰이라든지 이런 활동이 필요한 조직입니다. 기밀성이 있는 활동이 필요한데 그것을 행정부에서,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개입해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사법

행정에 관한 비닉성이 필요한 정보수집활동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것의 1년 총예산이 3억입니다. 필요 최소한으로 반영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님들.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소위에서 몇 차례 아주 심층적으로 논의했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다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소위에 함께하지 않으신 위원님이나 또 함께했다라도 같이 논의가 잘 안 됐던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 올해 예결위에서는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예결위가 본격 심의하기 전에 각 상임위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특히 특수활동비가 문제되는 정보위, 안행위, 그리고 법사위 등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었고요, 그것은 여야 대표 합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수활동비가 영수증 등 아주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지침에 맞게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특수활동비가 문제 되는 부처를 직접 거명하지 않더라도 그 내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지는 그 설명 내용이 적절하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소위에서는 거기에 따른 제도적 개선책을 강하게 요구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나 제도 개선을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와 함께 그렇게 확실하게 이 지침에 따르지 않는 특수활동비의 내용이라면 각 부처가 상당 부분 삭감하는 게 맞다라고 소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고요. 그 과정에서 방금도 나와 있지만 법무부나 감사원은 오히려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법원은 10% 정도의 감경을 했습

니다.

그래서 좀 전에 나와 있는 대로 제도적 개선책이 개선 의견으로, 권고 의견으로 나와 있으니까 저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이번 감액은 미미하지만 기왕에 부처에서 하고자 했던 제도적 개선책대로 확실하게 집행과 이행을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몇몇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셨지만 소위원회의 결과대로 의결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2016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부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 그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

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대법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이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증액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 여부에 대해 절차 편의를 위해서 다시 전체회의를 열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과 양당 간사 사이의 협의에 맡겨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위임해 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석한 황찬현 감사원장님, 김주현 법무부차관님,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님, 김용현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제정부 법제처장님, 이석수 특별감찰관님, 뒤에 공직자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장 안 하시나요?

필요한 기관장님들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이한성·김태원·정희수·김성곤·염동열·김상훈·윤명희·정수성·신경림·김진태 의원 발의)(계속)

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김용익·최동익·진성준·윤관석·최민희·이상직·강동원·진선미·이개호·김성곤·김현미·박남춘·정청래·박민수·김상희·안민석·임수경·원혜영·정성호 의원 발의)(계속)

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박수현·김영환·이종걸·서영교·이원욱·양승조·노영민·김승남·문병호·박완주·최원식·민병두·노웅래·이석현·김동철·박병석 의원 발의)(계속)
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원혜영·윤명희·김재경·심윤조·권은희·김성찬·민병주·박혜자·나성린·이자스민 의원 발의)(계속)
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박수현·김영환·이종걸·서영교·최원식·이원욱·양승조·노영민·김승남·문병호·박완주·민병두·이석현·노웅래·김동철·박병석 의원 발의)(계속)

(15시04분)

○위원장 이상민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정부 제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이신 이한성 위원님,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한성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와 1건의 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취나 정신장애로 경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사법절차를 통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명령 등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부분은 삭제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한 치료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년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원판결에 따른 소년원 송치기간이 항고 및 재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산입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반영하였으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을 소년원 송치기간에 통산하는 것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투자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기업 인수·합병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대체로 타당하게 보았으나 삼각주식교환 및 삼각분할합병제도 도입이 조문 제목에 명확히 드러나도록 수정하였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회사의 이사가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한편 일부 누락된 내용이 반영되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민 의원과 정갑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두 개정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등 5개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에서만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전속관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이 경우에도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속관할외 지역주민의 소송 수행의 편의성과 접근성도 아울러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법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경우 일반법원의 심판권은 배제되어야 하므로 법원조직법 제28조 단서 및 제32조제2항 단서를 신설하여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사건을 일반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하며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로 변경하되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소송 계속 중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항소사건을 특허법원이 심판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님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5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7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의사일정 제8항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허법원 관할 집중은 잘…… 우리나라 특허허브 강국이 되는 데, 법원에서 또 법무부에서도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할 검찰청 이런 사업을 하기로 했다니까 잘 되도록 같이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알겠습니다.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책질의

(15시12분)

○위원장 이상민 정책질의 하신다고 그랬지요?

○박지원 위원 죄송합니다.

법무부차관, 세월호 참사 재판 관할권 때문에 1심 재판부에서도 검찰에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계속 변경하지 않고, 결국 민간업체에 특혜를 준 해경 두 간부에게 지금까지 유죄를 확정치 못하고 대법원에서 관할권 문제로 파기환송 된 것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박지원 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검찰에서는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집행했습니다마는……

○박지원 위원 그렇지만 1심 재판부에서부터 지적한 내용을 검찰에서,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에요.

사법부의 결정을,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검찰이라고 하면 국민들한테 존중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오해를 받는 것 아니에요. 면죄부 주려고 그랬다,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면죄부를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검찰에서 법원과 의견이 달랐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되도록……

○박지원 위원 다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은 공소권만, 기소권만 있지 결정은 사법부가 판단 말이에요.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법무부차관 김주현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박지원 위원 이제 뭘 검토해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으면 다시 기소를 한다든지 그런 결정을 해야지 그대로 재판 끝나는 거예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하고 조금 전에……

○박지원 위원 그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위원님께서 이렇게 된 데 대한 책임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결정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검찰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보고드리는 겁니다.

○박지원 위원 언제까지 조치합니까?
 ○법무부차관 김주현 조만간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퇴임하는…… 오늘내일 아마 후임 검찰총장후보자가 결정되는데 저도 김진태 총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사실은 김현웅 법무부장관, 제 질문이에요. 인사청문회 때 ‘이런 제보를 받았지만 제가 얘기하지 않고 슬쩍 넘어갔다. 그런데 경찰에서 현 검찰총장의 서라벌CC 김광택 회장과 의 각종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사실이 아니다’ 했는데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경찰에서 한 문건이 입수되고, 저도 그걸 잘 알아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해당 문건을 경찰에서 작성했는지 여부도, 경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작성된 주체나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만 구체적 문건을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고 야당 의원인 저에게도 그러한 것이 입수돼서 제가 질문을 했다 그러면…… 저는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무조건 경찰 조사 문건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일반국민이, 다른 공직자가, 정치인이 경찰의 이런 문건과 이런 게 나왔을 때 없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그 진의를 듣자는 게 아니라 검찰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조건 경찰에서 부인할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걸 명확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불과 이제 한 달 반 있으면 퇴임하는 검찰 수장이 그런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경찰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김광택 회장과 의 관계를 알 만큼 알고 있다, 그걸 잘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지금 보도의 근거가 되고 있는 문건의 작성자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상

황이라는 말씀은 아까 드렸고요, 또 경찰에서도 그와 관련되는 문건을 작성한 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걸 가지고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보도한 그 회사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고 그 진위를 가려 줘야 되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경찰을 눌러서 감싸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철저히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무부차관 김주현 그러나 하여튼 누르거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요, 또 문건 작성자나 이런 게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보도한 내용이, 검찰이 지금 움직이거나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박지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론사가 책임 있는 것 아니에요?

명확하게 해 주라 이겁니다.

○법무부차관 김주현 언론사의 책임이나 그런 부분은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신문을 들어 보이며)

자꾸 길어져서 미안한데요, 제가 오늘 오후에 문화일보를 봤어요. 보셨는지…… 안 보셨겠지요?

보면 제가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때나 상임위를 통해서 교정시설의 재소자 관리가 안 좋다, 그런데 여기만 보더라도 정원비(定員比) 재소자를 최고 162%까지 수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도관 1인 담당 재소자가 중남미 수준이다, 그 내용을 읽어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교화가 되겠느냐 이거지요.

물론 사법부에 대해서 제가 처장님께 얘기할 내용은 아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에도 책임이 있겠지요. 입법 양형, 중형이 너무 많아졌다. 항소심에서 구속이 많아졌다 하는 그런 이유도, 분석이 있어요.

그것은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걸 보더라도 과감하게 가석방 제도가 활용되어야 됩니다. 세계적인 통계도 가석방된 사람들의 재범률이 낮고 우리 법에도

30%만 수행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지금 70~80%로 올려져 있고, 물론 사회적으로 마약사범이나 폭력범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더라도 또 고위공직자나 소위 사회비리사범에 대해서 100%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위원장 이상민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박지원 위원 그래서 최근 보도를 보면 이 가석방제도를 장관께서 청문회에서도 답변했고 상임위에서도 답변했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하고, 일부 보도를 보면 지금 현재 가석방제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법무부 본래의 교화 목적에 부응되게끔 잘 조치해 주는 것이 좋은데 장관께서는 지금 현재 법무부가 가석방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때 장관께서 답변했거든요, 지금 검토해서 하고 있다 하는.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주현 과밀 수용의 문제는 적정하게 교화·교육이 가능하도록 분산 수용하는 등으로 과밀되지 않는 방향의 검토를 하고 실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소자 숫자가 지금 많이 늘고 있어서 이런 과밀 부분이 계속되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계속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가석방 문제는 비교적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물의를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석방에 대해서 엄정하게 진행을 해 온 것이 사실인데 지금 말씀하신 마약사범이나 생명침해사범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준을 조금 더 탄력 있게 적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가석방 심사를 직접 일선에서 각 소별로 보고 있고 또 본부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지원 위원 그 시행시기는 언제쯤입니까?

○법무부차관 김주현 그런데 가석방은 개개의 행형 성적이나 교화의 정도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퍼센티지를 정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종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검토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민 또 질의하실……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겠는데요.

법무부차관님.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서영교 위원 성폭력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폭력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폭력 당했다고 고발한 사람은 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심학봉 전 의원건 관련해서예요. 지역에 있는 여성이 호텔에서 성폭력 당했다고 세상이 떠들썩했어요, 어떻든. 그래서 검찰수사까지 갔는데 검찰이 무혐의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무고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여성이? 무고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고소 내용이 정황을 좀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혐의라 하더라도 반드시 무고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개의 사건에서 해당 사건의 경위 또 정황 그런 것들을 보아서 완전히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인지 또는 정황을 과장한 것인지 그런 판단을 해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서영교 위원 정황을 과장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무고가 아니면 성폭력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정황이 과장되었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여간 강제에 의해서 성폭행 당했다고 세상이 떠들썩했는데, 그것도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러면 성폭행이든 아니면 무고든 둘 중의 하나가 있어야지 성폭행도 무혐의고 무고도 안 되고 이게 말이 되나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그래서 이 부분은 종전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정황의 과장에 불과해서 무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마 수사팀에서 다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수사팀이 뭘 그렇게 친절하게 그런 결론까지 내려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폭행을 했고, 대낮에…… 도덕적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도 결정을 했지만, 저도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싶지 않은데 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으면 성폭행이 되든지 아니면 무고가 되든지

이래야지 두 가지 다 아니면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검찰이 확실하게 판단을 해야지, 성폭행이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무고다라고 하든지 성폭행은 무혐의, 무고도 안 돼, 이러면 예를 들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당하고 나면 끝인가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그런데 무고로 기소를 하게 되면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종전에 그렇게 무고로 기소를 했다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고 무죄판결 받은 사례들이 있고요.

○**서영교 위원** 그러면 성폭행 아니에요? 무고가 아니라고 하는 건 성폭행이라는 거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그러니까 성폭행에 해당되지 않지만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고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판례들이 있고……

○**서영교 위원** 그런 판례들이 있는지는 어떤데……

○**법무부차관 김주현** 그런 사례들을 검토해서……

○**서영교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을 질의하고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어디에 맞춘 건지, 양쪽 다에다 맞춘 건지 권력에 맞춘 건지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오성 간첩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정원이 간첩, 문서 다 조작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그것에 속아 넘어갔는지 같이 주도를 했는지 몰라도 하여간 간첩은 무혐의가 났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무혐의를 낸 변호사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징계를 신청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변호사협회가, 대한변호사회가 ‘이 징계는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묵비권 행사라고 했고 그리고 또 변호인의 변론권에 의해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기각을 했어요. 한번 기각하고 또 이의신청을 검찰이 한 번 더 해서 또 기각을 했어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서영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법무부에다가 이의신청을 했더니 법무부가 그것을 ‘징계절차를 판단하기 위해서 개시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김주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이

변협에 위임이 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법무부에 변호사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게 징계 사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그 자체를 판단해야 하니까 법무부에서는 징계개시 결정을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법무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법무부가 징계할 수 있는 것은 대한변협이 했던 결정, 그 결정에 대해서 거기에 이의가 있을 때인데 이걸 결정이 없고 그냥 기각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기각된 거고 1차 기각, 2차 이의신청에 대해서 기각 이런 상태인데 결정이 있어서 그 결정에 불복하게 되면, 결정이 과하다느니 뭐하다느니 이럴 때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그건 이제……

○**서영교 위원** 그리고 이게 간첩사건을 무죄를 받아줬다고 해서 보복성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법무부차관 김주현** 해당 검찰에서의 징계 신청이 보복성이라는 말씀은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또 둘째로, 그러면 지금 변협에서 자체로 징계를 하지 않는 사안은 전혀 징계할 수 없는 것이냐 그런 부분은 법률에……

○**서영교 위원** 없는 것이지요, 이것 같은 경우. 왜냐하면 변호사 변론권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법무부차관 김주현** 물론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만……

○**서영교 위원** 당연히 그러니까 없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법률의 해석상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분리가 되어 있고 영역이 있고 독립성이 있고 변호사의 변호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묵비권에 대한 권리가 있고 변론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건이 마침 흉악한 사건 이런 게 아니라 이념적이어서 간첩으로 몰았던 거고 그것이 조작된 부분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

서 무죄가 나온 것을 또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맞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안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방어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보셔야지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아니, 이의신청은 검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조윤리협의회에서도 변협에 징계신청을 했다가 변협에서 전혀 하지 않은 것을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법무부가 법안을 읽어 보세요. 거기에 대한변협이 낸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지 아예 기각시켜 버린 것을 또다시 법무부가 한다면…… 같은 가족이잖아요, 검찰과 법무부가.

○**법무부차관 김주현** 위원님, 그건 운영에 관한 법률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실제로 그런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징계 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지금 저희가, 국회의원들이 어떤든 이 시간에 질의를 하는 것은 치우친 것 같다고 하는 느낌과 더불어서 객관적인 게 있어서 제기를 하는데 자꾸 아니다라고만 하시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하고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저는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징계개시를 했다면서요. 판단하겠다고 개시를 한 상태면 이게 한쪽에 치우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셔야지. 그래서 공정해야 되고, 국가기관이. 그래야 되니까 그런 걸 한 번 더 의견을 제기하니까 받아들여 봐서 검토를 해 보면 되는 거지 자꾸 아니다라고만 하시면 저희가 질의하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주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운영되는 법률의 해석과 운영실태를 제가 지금 보고드리는 겁니다. 변협에서 징계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 이의신청한 사건을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 결정에 대해서 다시 행정소송을 하든 그렇게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법률적으로 그런……

○**서영교 위원** 대한변협도 결정을 내리면서, 기각시키면서 ‘더 이상 법무부에 이의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문에 나와 있지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그건 대한변협의 의견이 그런 거고요.

○**서영교 위원** 대한변협이 그렇게 의견을 써 냈지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저희 법무부는 그것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서영교 위원** 치우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걸 한 번 더……

○**위원장 이상민** 이렇게 마무리하시지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아니, 그것은 검찰뿐만 아니라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이의신청한 것도 마찬가지로 개시 결정을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하여튼 서영교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나름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 논쟁 가지고 계속 시간 보낼 것은……

○**서영교 위원** 얘기를 하면 검토도 좀 하시고 그러시라고 얘기하는 거지.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달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상임위원회의 미상정 법률안 22건을 위원회별로 상정코자 합니다.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15시33분)

○**위원장 이상민**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법률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임재주 전문위원, 주요 쟁점별로 요지만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재주**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올라온 정당·후보자에 관한 지지·반대 게시물에 대하여 인터넷 언론사에게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공표·보도 등에 대하여 법정형을 상향 규정하는 한편, 재외선거 관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게재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가 여론조사기관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의 근거조항을 보완하여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였고, 체계·자구 심사 기간의 경과에 따라 기간에 특례를 둘 필요성이 상실된 부칙의 특례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과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김진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10항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명으로 확인하는,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현행 제도가 도입된 게 언제부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김진태 위원** 이게 그렇게 오래 안 됐을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진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흑색선전 이런 것들의 폐해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적어도 선거기간 중에는 이걸 실명등록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법을 시행한 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이걸 없앤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

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렇지요? 금년도에 합헌결정이 나왔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진태 위원** 그런 겁니다. 현재의 결정문을 보더라도 이것은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합헌결정까지 했는데 불과 합헌결정 난 지 몇 달 지나지도 않아서 이걸 스스로 개정을 해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 회부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임내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토론하실 거예요?

○**임내현 위원** 예,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여기 넘어와 있는 그 과정에 현재에서 선거기간 중에 인터넷 실명제로 하고 있는 현행법은 위헌이 아니다 이런 결정이 났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러니까 위헌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타당하나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지요. 불법이나 위법이나 또는 위헌이나 합헌이나 하는 것은 법상 안 되는 것이냐 그런 문제고 어떤 것이 정책적으로 합리적이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일 텐데, 그러면 그 장단점에 있어서 폐지하자는 주장은 어떤 점을 강조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전문가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방금 실무 과장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현재에서 위헌결정 난 것이……

○**임내현 위원** 합헌이라는 얘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합헌이라는 결정이 난 것이 정개특위 논의과정에서 나왔고 논의과정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에서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합의를 한 것이라고……

○**임내현 위원** 그렇다면 순서를 바로 잡았는데 제가 한 얘기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합헌이나

아니냐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거기에 따라서 무엇이 더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는 합헌이고 합법이면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다시 밝혀졌는데 이미 합헌이라는 게 나타난 상태에서 정개특위에서 해 가지고 그렇게 의견 일치를 봤다 이런 얘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렇다고 합니다.

○임내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하고는 조금 다른 견해입니다만 양쪽에서 합치가 됐다면 굳이 보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노철래 위원님.

○노철래 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노철래 위원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제1항제1호를 보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가족에 한해 대리신청을 허용하고 또 대리신청자의 여권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노철래 위원 그런데 개정안은 대리신청자의 여권사본 제출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가족이 아닌 자가 대리신청할 수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현장에서 신청을 받을 때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첨부가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면 투표하는 때에 실물 여권을 가지고 와서 또 거기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같이 가지고 와서 투표를 할 수 있게 같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철래 위원 이 목적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재외선거인명부를 계속 사용하는 영구명부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리 되면 예를 들어 상사원이나 유학생 같은 경우 수시로 국내에 왔다 갔다 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 부분하고는 또 다릅니다. 영구명부제는……

○노철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인터넷으로 간소화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노철래 위원 간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만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러니까

영구명부제를 쓰는 대상은, 상사원이나 학생들이나 그 사람들은 영구명부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쪽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고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영구명부 대상이 아닙니다.

○노철래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선거가 있을 시에 신고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다고 본다 저는 그런 의문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218조의5제1항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항으로 봅니다. 대리신청을 남발하게 되면 선거업무도 그렇고 혼선을 엄청나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2소위에 넘겨서 더 한 번 봤으면 좋겠다, 이것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 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일단 공선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앞에 임내현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선관위 사무총장님 정확히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실명의무 규정에 대해서 합헌을 판결한 것은 맞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맞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합헌의 의미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인터넷 실명의무 조항을 놔두는 것이 위헌이 아니다 이런 뜻인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조항들이 합헌인 조항이 엄청나게 많겠지요? 거꾸로 말하면 위헌인 것이야 문제가 이미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닐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다른 규정들이 다 합헌이니까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전해철 위원 그 합헌을 확인한 거예요, 현재에서는.

그러면 이 조항을 폐지할지 안 할지의 입법형성권에 대해서는 국회가 갖고 있는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맞습니다.

○**전해철 위원** 거기에 대한 입법형성권이 합헌 판결에 따라서 뭐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바뀔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다른 어떤 규정도 가면 합헌이 나온다 해서, 그러면 그 규정은 국회의 입법형성권이 작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전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전해철 위원** 그런 면에서 현재의 합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정개특위 논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합헌 판결이 있음을 알고서도 폐지를 의결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논의과정에서 이것을 알았어요, 합헌이 나온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가 필요하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기 입법 이유에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 선거운동 기간 중에 그렇게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부터 해서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폐지를 합의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렇다고 봅니다.

○**전해철 위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조항만을 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선거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 아니에요. 지금 수없이 많은 조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야가 이 조문에 대해서는 여가 조금 문제가 있어도 양보하고 이것은 야가 좀 양보하고 해 가지고 선거법 수십 개의 조문이 이와 같이 정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당이 생각할 때 좀 유리한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유리한 지지층이 있을 수도 있고 유리한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선거법의 어떤 조항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야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무기를, 선거를 하는데 무기를 여야가 서로 협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양보하고 저렇게 양보하고 해서 선거법 합의라는 것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정개특위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법사위에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합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여야가 합의한 것을 한 조문을 빼 버린다면 이것은 여야의 합의정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정개특위의 역할에 대해서 아예 법사위가 송두리째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제 이야기에 동의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저는 선거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인터넷 실명제 부분은 우리가 선거법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정말 극히 일부입니다, 지금 개정돼야 되는 방대한 것에 비한다면.

그래서 저는, 물론 야당 간사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 합당한 이야기지만 또 거기에 다른 반대의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빼고서라도 나머지 부분은 통과를 시켜 주십사 하는 게……

○**전해철 위원** 통과하는 게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것이 제 입장입니다.

○**전해철 위원** 그것은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선관위 사무총장이 다른 부분 중요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위원장님 이것은 소위로 회부할 일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또 소위로 가서 해결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저는 여야가 정개특위에서의 여야 합의정신대로 해서 통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한성 위원님.

○**이한성 위원** 경북 문경·예천 출신의 이한성 위원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합헌 결정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이한성 위원** 합헌 결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인터넷 실명제를 두는 것이, 뒤도 괜찮다는 뜻이지요? 물론 폐지해도 괜찮다는 뜻이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리고 총장님께서서는 여야 협상 과정을 정개특위에서도 지켜보셨을 텐데 워낙 정치적인 특위이기 때문에 스케일이 큰지 모르지만 새누리당으로서 선거에 임박해서 그냥 비실명제로 무책임하게 후보를 비방하고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빠져나가는 경우 이것은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선거 패배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일이 사실은 그 근처까지 갔던 일이 많

습니다, 아찔한 순간도 많고.

그래서 새누리당으로서는 이것을 대단히 아킬레스건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정개특위에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다른 주고받을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턱 합의가 되어 온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 원내대표단하고 당의 전체 분위기도 이것은 대단히 아쉬운 협상이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사 개인 의견도 아니고 그런 만큼 좀 더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수가 하고 있으니까, 총장님도 그런 분위기를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입장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지금 이한성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에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그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보면, 오늘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께서 안 나오셨으니까 그 진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것은 자구도 법사위에서 수정하지 마라, 그러한 정신이 흐르고 있었고 지난번에 문제가 되는 것도 이병석 위원장이 거의 읍소라고 할까 강압이라고 할까 할 정도로 해서 통과시켜 줬어요.

그런데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사실상 종료가 돼서 선거구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은 오늘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새누리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빼고.

○위원장 이상민 이것은 선관위 입장에서는 정치일정상 오늘 꼭 통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지금 전해철 간사하고 이한성 간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반드시 꺼서, 지금 임내현 위원님도 그렇고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뜻이고……

○박지원 위원 저는 아니고, 저는 빼고.

○위원장 이상민 빼고 하자는 뜻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당내 입장 조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저는 이 조항만 빼고 하자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런데 그것을 빼고 하자는 얘기는 원안 통과를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시지요. 잠깐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간사 사이에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협의를 좀 하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상민 정회되었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번 10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위 인터넷 실명제 폐지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을 벌여서 각 당에…… 다시 오늘 재의에 부쳐져서 한 건데 또다시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또 여야 합의로 정개특위에서 정치적 큰 합의를 했는데 법사위에 와서 이렇게 논란을 벌인 것에 대한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정개특위에서 이를 용의해서 해결을 하십시오. 우리가 법리적으로 이것을 따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능하면 정개특위에서 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소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그 논쟁이 또 불거지고 하니까……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전체위에 계류하고 시간 절약을 위해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다른 법안을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전체위에 계류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장 이상민 예.

선관위 사무총장님은 잠시 퇴장하셨다가 필요하면 다시 한 번 들어오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알겠습니다.

1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 의원 대표발의)(홍문종·유승우·이한성·이만우·손인춘·홍지만·김세연·이우현·이현승·유일호·이재영 의원 발의)

1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강석훈·안홍준·송영근·김명연·홍지만·유의동·김한표·이재영·김광림·박상은 의원 발의)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주승용·강기정·서영교·양승조·유성엽·김춘진·부좌현·김영록·최규성·박민수·김성곤 의원 발의)
1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박대동·박명재·최봉홍·박창식·이노근·김정록·문정림·이만우·박맹우 의원 발의)
15.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이개호·임수경·이한성·박민수·김우남·전순옥·민홍철·설훈·김종태 의원 발의)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정호준·이찬열·이개호·박주선·진성준·박홍근·김승남·김관영·이춘석·신경민·김윤덕 의원 발의)
1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이목희·김기준·박홍근·이상직·송호창·인재근·김광진·이개호·김성곤·진선미·박민수·윤관석 의원 발의)
1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조정식·윤관석·양승조·배기운·이종걸·최민희·김성주·유성엽·김광진 의원 발의)
1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박대동·박명재·최봉홍·박창식·이노근·김정록·문정림·이만우·박맹우·김현숙 의원 발의)
20.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김윤덕·김재운·민현주·신경민·유성엽·김상희·윤관석·이석기·이인영·인재근·장하나·최민희·홍중학 의원 발의)
2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장 제출)

2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9.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1.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2.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22분)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32항까지 22건의 법률안을 상정코자 합니다.

11항 홍문종 의원 대표발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2항 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3항 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항 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항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6항 정호준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에 17항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항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항 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항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21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항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항 정부 제출 기술사업 일부개정법률안, 30항 정부 제출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 31항 정부 제출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32항 정부 제출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2건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부안에 대해서는 정부 측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기술사업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술사업 일부개정법률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술사 사무소 개설등록증 게시 및 장부 비치 의무를 없애고 기술사회 회원 자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실효성이 없는 관련법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격지자 간 송금수단으로 이용하는 우편환 지급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편환의 양도제한을 폐지하고 양도 시 민법의 채권양도 규정을 준용하여 우편환 증서의 양도를 자유롭게 하며, 우편환 증서의 양도 허용에 따른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셋째로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실명거래법과 상충되는 우편대체 계좌명칭 제도 규정을 폐지하고 전자금융거래 중심으로 금융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사문화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우편대체 서비스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국민생활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 기간에 대해 2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심태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심태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에 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이용요금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을 운영 중에 있는 자 또는 운영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가 받아야 하는 배출계획서의 승인에 관한 경과규정 중 중복으로 규정된 부분을 삭제해서 간결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의무이행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을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위치정보 접근권한자인 직원이 될 수 없고, 또 선임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침해되고 또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서 과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헌성의 해소를 위해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위치정보 접근권한자로 지정될 수 없도록 수정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위치정보 접근권한자의 지정은 효력을 잃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 의사일정 제20항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으로서 방송프로그램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시청 흐름을 저해하는 등의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야 하는 의무의 범위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수정하고, 권한의 범위가 모호하여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외주제작사는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자적 침해행위가 새로 신설되는 형벌 규정으로서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가 불필요하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의사일정 제24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내용이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교육내용을 ‘감시기 운영 및 유의물질 조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하게 수정하고, 시행일이 상이한 감시기 운영자 관련 규정의 시행일 통일 및 대통령령의 준비를 위한 기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에 시행하도록 규정된 일부 조항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통일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 인증대상자의 범위가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시한 수정의견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특수유형 부가통신 사업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적 조치의 의미가 기술적 조치사항인지 기술적 실시계획인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하게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을 의미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의사일정 제29항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원본과 주서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의사일정 21항 방송법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첫째로 명확성의 원칙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대상이나 기준이 굉장히 불명확하고, 지금 여기 개정안에 의하면 ‘품위를 훼손하거나 시청 흐름을 저해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전문위원은 이것을 그냥 빼고 가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미봉책으로 과연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상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방송사와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에 대한 조항이 없어서 굉장히 문제라고 보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개정으로 간접광고가 허용될 경우 외주제작사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권한을 누리는데 반면 책임에서는 빠져나갈 소지가 굉장히 크고, 외주제작사는 방송통신발전기금도 내지 않으면서, 납부 대상이 아니면서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되면 방송사가 그 책임을 다 떠안을 우려가 크다는 것이 있고요.

이로 인한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 또 시청자들의 여러 가지 피로감 누적 이런 것들의 모든 부작용을 방송사가 대신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헌법상 책임주의의 위반 소지가 크고, 그래서 이것은 소위에 넘겨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의사일정 21항은 그렇고요, 18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8항은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 완전히 그 직에서 당연퇴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도한 것 같아서 그 해당 업무에서만 배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헌법상 원칙에 맞을 것 같아서 18항 역시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지금 출석하신 국무위원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세 분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또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저도 줘……

아까 김진태 위원님의 18항·21항과 함께 저도 지적을 하려고 그러합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양희 장관님, 당초에는 이용요금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정도로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이게 방통위원장님 소관인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관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단지 승인절차를 밟는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기에 서비스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소비자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요금제를 이렇게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 차원에서 심대하게 부딪힌다라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부장관 고시로 신고사항을 정할 때 국회와 협의하기로 상임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위원장 이상민 이것도 한번 소비자 권리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당초에 승인제로 한 이유는 재벌기업, 대기업들의 그런 횡포를 제어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다음에 방송법, 저도 김진태 위원하고 같은 취지인데요.

이게 보니까 간접광고를 지상파에 도입하는데, 이것은 방통위원장님 소관이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사실 무분별한 종편의 간접광고로 인해서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상당히 제약받는 것은 틀림없는데 사업자들의 수익모델을 어느 정도 담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도입했다, 그래서 지상파까지 가는 것이 어느 정도 양해가 된다 해도 보니까 무분별한 간접광고에 대한 통제방법이 사후적 제재방법밖에 없어요. 너무 실효성이 담보가 안 된다……

그리고 지금처럼, 방송현황을 보면 당일 날 제작해 가지고 방송사에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방송사가 제대로 통제가 되겠어요? 그냥 급하니까 오늘 저녁 때 방송되는 드라마 이런 것을 곧바로 방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한 사전적 규제가 매우 미약하다라는 차원에서 시청자들의 시청권에 대한, 또 건전한 사회풍속에 대한 일정한 통제방법 등이 필요하고, 법사위에서 충돌하는 권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 의견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것은 그냥 제 제안인데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 등 관리법……

미래창조과학부장관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위원장 이상민 성과지표가 그동안 계량적 지표에 그쳤고 논문 횟수에만 급급하니까 논문의 질을 함께 살펴봐야 된다 그 방향성은 맞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표준성과지표에 질적 성과지표를 추가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질적 성과지표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이 기준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제대로 했느냐.

그리고 저는 이것을 과연 외부에서,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또 다른 누가 질적연구 논문이 높다 아니다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부분의 정밀한 제도가 설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포함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때 위원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그냥 제가 제안한 거고.

하나는 우편환법입니다.

우편환의 권리이전 효력발생 시기, 물권의 효력발생 시기에 대해서 민법 제450조 원칙 규정이 있는데 당초에는 물권 효력이 발생하려면 우편환 증서를 인도하고 우체국에 통지하는 요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우편환 증서는 예외로 했던 말이에요,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러려면, 이렇게 중요한 물권의 효력발생 시기를 정하는 민법상 원칙을 예외로 두는데 이에 대한 상한선을 두지도 않고 부령에다가 백지위임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상한을 뒀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같이 소위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편대체법에 따라 지급증서를 재발행하도록 제한 없이 풀었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지급증서가 발행될 경우 이로 인한 거래상 선의의 피해자가 유발된다는 거 거래의 안전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위에서 법리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상민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방송법하고 위치정보법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18번 위치정보법에 대해서 김진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해당 직에서 퇴직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업무에서만 배제되는 것으로 법사위 전문위원 수정안이 나와서 저희가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1번 방송법 일부개정안은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내년 3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의 후속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송법의 가장 주된 내용은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의 일정 비율 이상의 콘텐츠를 반드시 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경우 방송사가 자기 자회사를 활용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자회사는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중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특수관계자 비율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폐지하면서, 그러니까 외주제작사한테는 좀 더 불리하게 되고 그다음에 방송사한테는 유리하게 되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혁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지상파 방송사하고 외주제작사하고 사이에 서로 협약을 하면서 지상파 방송사가 그전까지는 제작협찬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오로지 외주제작사만 제작협찬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상파에게 제작협찬을 허용해 주고, 반대로 지상파만 간접광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외주제작사한테도 간접광고를 허용해 주기로 서로 협의가 되어 있는 약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감안해 가지고 법안을 지금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원래 저희가 처음 만들었던 법안에는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전문위원 수정의견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방송사가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사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떠한 절차를 두면 방송사가 외주제작사를 믿고 이와 같은 간접광고 판매를 허용하겠는지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전문위원 수정안에 있는 것처럼 판매를 하기 전에 미리 방송사하고 사이에 '내가 이런 드라마 내에 이런 간접광고를 판매해서 넣으려고 그러는데 괜찮습니까?'라고 해서 사전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주제작사는 프로그램을 다 제작하면 반드시 방영을 하기 전에 방송사업자한테 자체심의의를 거치도록,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간접광고가 시청권에 침해가 된다면 그것은 방송사가 당연히 알아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안에 있던 품위 훼손이나 시청 흐름을 저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방송사업자가 자체심의를 할 때 만약 자체심의를 소홀히 해 가지고 그대로 방송이 되면 그 방송된 것에 대해서 간접광고 위반으로 방송사업자가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방송사로서는 그런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체심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품위 훼손이나 시청 흐름 저해는 다 거르리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제작사의 혜택이라기보다는 방송사하고의 사이에 협의가 다 되어서 방송사도 외주제작사가 이렇게 하는 것에 이의가 없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저희 법사위에서 참고를 하고 그것도 고려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만 정리할게요.

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뭐니까? 수정할 부분 없나요? 다 원안 통과 의견이었어요? 수정한 의견을 말씀한 것처럼 번호를 얘기해주세요, 수정의견.

그러니까 순번을 불러 달라고, 정리하려고.

조금 이따 해 주실래요?

그러면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전문위원 들어 보세요.

18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것이 방송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한 하자를 수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전문위원이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전문위원 심태규** 원칙적으로 추가된 부분이 종전에 임원이었던 게 직원까지 포함되는 안입니다. 그래서 직원 부분은, 종전에 임원은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접근권한자가 종업원인 때에는 그 사람이 결격자가 될 때는 접근권한자의 지정 부분만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해서 직원의 지위를 전체 잃지는 않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개정안 부분에 아까 김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수정한 상태입니다. 제가 제시한 수정의견은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지금 방송위원장님 이야기도 그렇게 수정이 되어 있어서 지적사항은 하자가 치유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저희도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전해철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18항은 좀 더 분명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하자가 치유됐다니까?

○**위원장 이상민** 그건 김진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고.

○**김진태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냥……

○**위원장 이상민** 그건 그렇고 다른 문제점을 저도 제기하고 다른 취지로 한 게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아니요, 그 부분 됐지 않아요, 18항은?

○**김진태 위원** 예, 18항은 됐어요.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18항은 됐다고.

○**위원장 이상민**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18항은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민** 아니, 여러 문제 제기를 한 게 있는데 제가 아까 제기한 건 김진태 위원님 그 부분하고는 다른……

○**전해철 위원** 아니, 방송법은 위원장님이 하시고 18항은 위원장님이 안 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18항 문제 그 한 가지였었습니다.

○**전해철 위원** 21항을 말씀하셨고, 18항은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해서……

○**위원장 이상민** 18항은 그러면 통과.

○**전해철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7항 한번 봐 보세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걸 지금 당당이 누구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접니다.

○**전해철 위원** 장관님, 그러면 봐 보세요.

일반적 자료제출하는 걸 삭제하잖아요, 장관의 자료제출 명령권을? 개정안 35조6항을 보면 35조6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 이걸 삭제하면 괜찮아요? 이것을 해 버리면 법률의 근거가 없어진다 이렇게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다른 44조하고 88조 내에 자료제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 있어서 여기를 삭제한 것이라고……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44조, 64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88조.

○**전해철 위원** 88조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64조, 88조.

○**전해철 위원** 그렇지요, 44조가 아니라 64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64조, 88조.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64조하고 88조의 법률적 근거로 충분하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전해철 위원**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검토의견에 이게 불충분하다는 것도 있고…… 44조가 아니라 64조, 88조에 의해서도 법률적 근거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27항은 그렇게 정리해서 분명하게 해 놓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민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방통위원장님, 방송법 일부개정안 관련해서 김진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지역민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김도읍 위원 이렇게 외주제작사 간접광고가 전면적으로 허용이 된다 그러면 지역방송의 어떤 수익이라고 할까요, 이익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혹시 위원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종전에 간접광고를 소위 판매하는 주체가 방송사였을 때 실제로 제작비를 투자하는 쪽은 외주제작사지만 방송사가 판매해 가지고 방송사가 일부를 가지고 외주제작사한테 줘서 나머지를 제작 재원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바꾸게 되면 외주제작사가 주체적으로 광고를 판매하게 되어 가지고 제작비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은 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작사에게, 아까 말씀드린 제작사에게만 허용됐던 협찬이 방송사한테 허용이 되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정리가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틀에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렇지요. 소위에서 이 부분, 지역방송 관련된 부분도 조금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저희도 그 부분도 검토해 가지고 소위 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방송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

으신가요?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그건 아니어도 방송법 관련해서. 방통위원장님, 제가 한 몇 번 제기를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지역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옛날에 우리는 KBS, MBC, SBS 하여간 몇 개 방송만 보면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청료만 좀 내고 봤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디지털이 되고 뭐가 되고 그러면서 케이블에 가입하지 않으면 TV를 볼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권한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 다 이게 그렇지요. 공영방송 비용만 안 내고 더 많은 돈으로 가입해야 TV를 볼 수 있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서영교 위원 선택해야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소위 말해서 지상파를 직접수신 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수신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 직접수신 환경은 제가 수치로 알고 있기로는 한 97%는 직접수신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KT 올레’에 가입하거나 이러지 않고……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앓고 그냥 안테나 세워서 가지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영교 위원 97%가 가능하다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커버리지로 보면 제가 그 정도 되는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산간 오지라든지 이런 특정한 지역 이외에는 지상파에 전파가 다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산간 오지도 어르신들 계시지만 안테나를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시청안테나로 그걸 죽 봐 왔었는데요. 지금 대부분 IPTV나 케이블로 가입하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공시청안테나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생활수준이 일정 이상이기 때문에 다 편리하게 IPTV나 케이블로 보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공시청안테나를 안 써 가지고 최근에 보수를 잘 안 해서 그게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언제인가부터 그걸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아니고 지상파만 해서 볼 수 있었는데 공시청안테나가 안 되어서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어느 순간에 다 그걸 가입해야만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다시 복원이 된 건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이 유료방송에 가입해서 보면 더 많은 채널을 볼……

○서영교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 할아버지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것 가입하려고 생각 안 했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TV가 안 나오니까, 어느 날부터 안 나오니까 가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마 안 나오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테나를 통해서 과거에도 죽 보셨기 때문에 방송 수가 제한이 되고, 그다음에……

○서영교 위원 방송 수 제한이랑 상관이 없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한 1만 원, 2만 원씩 내는 케이블 방송 이런 걸 빼고 그냥 지상파만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가능합니다.

○서영교 위원 되고, 그리고 그것은 안테나나 이런 걸 설치해야 가능한데 원래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원래 과거에 다 되어 있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다 되어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케이블이나 이런 걸 가입해야만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게 오해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지금 직접수신율이 7% 조금 안 되는 것으로 통계상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전국에서 직접수신으로 볼 수 있는 커버리지는 97%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오지나 이런 데가 아니라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된다는 말씀이군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다 되는 거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랬고 사람들이 다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전체 가입해서 많은 비용을 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안테나로 다 보실 수 있으십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안테나 설치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나라에서 다 해 주는 건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것은 아마 자가, 직접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은 좀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하여간 그렇게 자기가 다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방통위원장님, 어제 지역방송토론회 결과 보고받으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요, 보고 못 받았습니다.

○박지원 위원 있었던 건 알았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있다고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박지원 위원 허원제 방통위 부위원장께서 오셨던데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지금 지역방송의 경영상 어려움 잘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물론 방송의 다변화, 즉 케이블이라든지 종편, 인터넷 TV 등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박지원 위원 그러나 그 지역방송은…… 지금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경제나 문화예술 등 모든 것이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박지원 위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방송이 그 지역에서 사회문화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방송은 방통위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착안해서 사실은 작년에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해서 올해 초에 지역방송발전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상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방위에서도 예산을 지금 거의 세 배 이상 미방위 차원에서 대폭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립한 정책에 따라서 예산만 좀 확보가 되면 좀 더 지역방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전에는 방송발전기금이 있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건 어디에다 쓰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그 기금에서 쓰려고 그러는데요. 그 기금도 저희가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재부의 예산편성에 같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금액을 배정받아야 됩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은 이미 국회에 왔는데 기재부에서 반영이 되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반영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금액을 말씀드리면 지금 기재부에서 대폭 깎여 가지고 30억밖에 안 되어 있어서 미방위에서 그것을 100억으로, 70억을 증액해 가지고 소위에서 곧 논의를 하고 전체 회의에서 그렇게 의결을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위원장도 좀 노력을 해야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저도 물론 당연히 기재부에 얘기를 해서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나중에 부도나고 나면, 폐쇄되고 나면 할 수 없는 것 잘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큰 문제입니다.

○박지원 위원 미창부장관께 여쭙 보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박지원 위원 혹시 우정사업본부장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 이병철 경영기획실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박지원 위원 장관께서 잘 파악이 안 되시면 이쪽으로 나와서 경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다.

○박지원 위원 경영기획실장이 답변을 해 줘도 좋습니다.

지금 우정사업본부는 실제로 전국에 3500여 개의 우체국을 가지고 있지요?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여기에서 우편물은 자꾸 축소되지 않습니까?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택배나 금융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1년에 우편사업으로 인해서 얼마가 적자가 나고 금융서비스 등 다른 사업으로 얼마나 흑자가 납니까, 우정사업본부에서?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 이병철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편사업에서 작년 같은 경우 한 700억 정도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금융사업에는 예금과 보험서비스가 있는데 두 사업에서 약 3000억 정도의 흑자 규모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은 공공성이 좀 있잖아요.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런 국가기관에서 흑자가 난다고 자꾸 지방 오지의 우체국을 구조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합니까?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 이병철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우체국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특히 금융서비스에서 지방 도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해서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이 사는 곳은 전연 금융기관이 들어가지 않아요. 잘 알고 계시지요?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우체국에서 금융서비스를 하는데 그걸 구조조정해서 폐쇄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서민층, 대개 서

민층은 연로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어디로 가야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편사업에서 한 700억 적자가 나더라도 금융서비스 사업의 예금·보험 사업에서 3400억이라고 그러셨지요?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 이병철 예.

○박지원 위원 그러하면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미창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박지원 위원 그러한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노인들이 은행 금융기관도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체국을 구조조정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용의는 없어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우체국도 마찬가지로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종업원의 직장도 정년이 있고 보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것이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서비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의 우체국 사업을 하면 700~800억이 연 적자지만 과거부터 물론 취급했지만 금융·보험 업무를 함으로써 3500억 정도가 연간 흑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조조정을 해 버리는 것은 공공성을, 특히 국가기관인데 미창부 우정사업본부라고 하지만 다 공무원 아니에요? 그러한 것을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러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지요, 예특회계?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예금사업·보험사업, 3대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일반회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왜 정부에서 당기순이익 흑자 나는 것을 1000억 이상씩 자꾸 일반회계로 가져가요?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 이병철 기획재정부 등의 재정당국하고 전체 국가재정을 협의하면서 이익이 난 경우에 이익금의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서민을 보호하고 어려운 지역의 분들을 보호하면서 흑자 내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재정수입으로 가져가는 것은 옳지요.

그런데 자꾸 구조조정해서 국민 편의는 없어요고 더 어려움에 처하는데 3500억씩 흑자 내 가지고 1000억씩은 일반재정으로 돌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미창부에 우정사업본부의 잉여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 이병철 예.

○박지원 위원 장관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박지원 위원 지금 1000억씩 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셨어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것은 좀 지양되어야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박지원 위원 아니, 전체 주민 편의를 보고 해서 흑자가 나면 일반재정으로 돌리는 건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필요한 곳에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일반 개인 기업처럼 흑자 내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을 우정사업본부장한테 지시해서 가지고 그 계획서를 가지고 현황을 저한테 한번 보고해 달라고 그러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민 방통위원장님, 아까 미방위에서 증액했다지만 그 지역방송 지원 그게 예결위에서 관철이 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 금액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지역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고 국민의 목소리 표출이 잘 반영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종편까지 합세하니까 수도권,

서울 얘기밖에 없어요, 방송을 다 들어 보면. 그러다 보니까 지역은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점을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법안 순번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항·14항·15항·19항·20항·23항·29항·32항 이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2항·16항·17항·18항·22항·24항·25항·26항·27항·28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1항·21항·30항·31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2소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끝내기 전에 아까 하던 질문에서 1분만 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실제로 그러면 TV가 나오는데 착각했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민원을 하고, 노인분들 어른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꺼번에 안테나를 없애 버렸다든지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도 거기는 조금 사는 데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 독거노인들이나 어른들이 많단 말이예요. 그런 데는 디지털화되면서 채널이 바뀌고 실제로는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굳이 많은 비용을 내면서 이렇게 쓸 필요도 없고 어른들 진짜 한 푼 한 푼이 중요한데 TV가 안 나오면 생활하

기도 힘들어요, 시간을 지내고 이러려면. 그래서 대대적으로 좀, '지상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운동을 한 번 벌인단든지 지역에서 실사례를 보여 준다든지, 그리고 나아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가 없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작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저희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어려우신 분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는 것을 논의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바로 저희 지역부터라도…… 아니, 그러니까 이걸 뭐 그걸 떠나서 실제 상황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많은 비용이 그리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아시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 계획을 가져와서 저희 지역에서 한번 실제로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전체적으로 홍보 작업들을 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홍보하는 방안, 방법 이런 것을 해서 보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예, 바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세 분은 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노고도 많으셨습니다.

33.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3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35.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3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7시08분)

○위원장 이상민 다음은 여가부 법안을 상정토

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3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항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률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심태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심태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종합평가를 거부·방해·기피하는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인데 과태료가 행정상 의무반행위에 대한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없고, 현행법 67조에 따라서 보고 요구나 검사 등이 가능하며, 개정안 제72조제1항제1호의2와 현행 제72조제1항제2호의 과태료 부과 조항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근거가 불명확해서 중복 부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개정안 제72조제1항제1호의2 및 관련 부칙 조항을 삭제하거나 의무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그 수정에 관해서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경미한 자구 정리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누락된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등의 경미한 자구 정리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행법 제26조에 보호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 조항이 이미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따라 보호시설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경비 보조 조항을 삭제하고 보고 및 검사 요구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한 개정안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 주체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원본과 주서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33항, 전문위원도 같이 이야기해보시지요.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관께서 전문위원 의견 들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전해철 위원** 이게 신중한 검토라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있는 동법 제67조에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기관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어겼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걸로 종합평가를 거부·방해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느냐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 이외에 별도로 종합평가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적시를 하는 것이 보다 선명하게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해철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그래서 원래 여가위에서 통과된 대로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전해철 위원** 그런데 앞부분에 근거 부분을 좀 명확히 하자 이렇게……

전문위원, 그 부분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의무규정을 일단 해야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부분 어떻게 하냐고요.

○**전문위원 심태규** 원칙적으로는 의무규정을 하는 것이 보통 맞는 것인데 이 법에는 그렇지 않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지금 여가부 쪽에서 말씀하시는 겹치지 않는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겹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종합평가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관계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아니면 소속 공무원이 와서 보자

고 하는데 장부나 서류, 물건들 검사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미 67조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행위라면 양쪽의 과태료 규정에 다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중복해서 처벌할 것인지, 어느 규정이 우선하는지에 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중복으로 처벌될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전해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장관께서, 2소위에서 정리를 해 볼게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전해철 위원 사례는 있지만 그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도 좀 비교해서, 다른 법조문도 보고 해 가지고 정리해서 통과하는 걸로 합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항로표지법이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법 사례에 맞추어서 그렇게 자료 정리를 했습니다.

○전해철 위원 장관께서 그런 자료도 주면 우리가 잘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전해철 위원 그래서 33항에 대해서는 2소위에 회부해서……

○위원장 이상민 34항이요?

○전해철 위원 33항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33항은 2소위.

다른 위원님들…… 이한성 위원, 같은 취지입니까?

○이한성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한성 간사님도 같은 취지이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33항은 2소위, 34·35·36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이렇게 의결을 하고 장관께서는 돌아가시도록 하는 게……

○박지원 위원 김희정 장관한테 질문 하나 하고.

○위원장 이상민 질문하실 겁니까?

○박지원 위원 예.

김 장관, 언제 관두세요? 출마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 왜 그걸 묻느냐 하니까 조윤선 장관한테, 뒤에 여가부 실무자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외국인 신부들이 성폭행을 가족으로부터도 당하고 해 가지고 그분들의 피해가 막심한 것 알고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박지원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쉼터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라 했더니 조윤선 장관이 철석같이 거기서도 약속을 하고 저하고 전화를 몇 번 했어요. 그랬는데 정무수석으로 갔단 말이야. 정무수석으로 가셔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안 했어요. 이제 김희정 장관한테 부탁을 해 봐야 내일모레 선거하러 내려갈 거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 장관도 저도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시는 모두가 20대에서 만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가부 차관이나 뒤에 실무자들, 여성을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장관이 약속하고 몇 번 한 것을 말 한마디 보고도 안 하면서 여가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후임 장관한테 똑똑히 인계하고 가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일단 저에 대한 격려의 말씀이나 미래에 대한 축복의 말씀까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지난번 법사위에 출석했을 때 저에게……

○박지원 위원 말씀했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그래서 곧바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위원님 방의 정책비서관과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다 설명을 해서 어떻게 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코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박지원 위원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그러려면 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행법은 말씀하신 단체가 지자체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자체 인가는 첫 번째 단계가 안 켜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해도 현행법상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시설 관계자 그리고 위원님 방 보좌관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서로 이해를 한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보면 복지는 사실 중앙정

부에서 전부 해야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다 옮겨 놓으니까 그것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것보다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인가만 받으면 되는 건데 인가 자체를 못 받고 있어 가지고……

○**박지원 위원** 지자체에서는 자기들이 부담할 부담금 때문에 모든 복지 문제는 기피하고 올리지를 않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그런데 왜 여가부 직원들을 야단치십니까, 지자체를 야단치셔야지. 우리 직원들은……

○**박지원 위원** 여가부에서 책임지고 해야지.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저희 직원들은 목포시 지방공무원에게 어떻게 하라고까지 일일이 항목 하나하나 다 성의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박지원 위원** 정치인 장관이라 저한테 야단치는데 제가 야단맞고 할 테니까 좀 챙겨 보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우윤근 위원** 짧게……

○**위원장 이상민** 우윤근 위원님.

○**우윤근 위원** 김희정 장관 오랜만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우윤근 위원** 저랑 18대 때는 외국에도 가서 많은 노력도 하고……

사표는 언제 낼 거예요?

○**서영교 위원** 똑같은 질문 했어요.

○**우윤근 위원** 했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말씀드렸듯이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우윤근 위원** 김희정 장관, 그때 보니까 아주 능력 있는 여성 지도자인데 뭐 하나 물어볼게요.

수유실, 요새 우리가 애를 너무 적게 낳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소관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성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법안을 하나 냈어요. 보니까 영유아를 동반하고 동사무소에도 가고 여러 기관 가는데 지하철역사 큰 데나 또는 대합실 이런 데 수유실이 없는 데가 태반이더라고요, 그냥 노력의무만 규정해서. 그런데 여성단체 보니까 그게 꼭 필요하다 하던데 여성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법안은 제출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부처에서 하는 것 중에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드는 법안이나 정책을 할 때 이게 양성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느냐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시설을 만들 때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를 하면 들어가는데, 비록 복지부 법이지만 함께 힘을 합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윤근 위원** 그러시고, 김희정 장관은 정치인으로서도 크게 성공하고 계신데 하여튼 거취를 얼른 해 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34항·35항·36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2소위로……

○**입법조사관 이진구** 33항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33항, 제가 목소리가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33항이라고 분명히 제가 했는데 그렇게 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33항은 2소위로 회부되기로, 그렇게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3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최원식·은수미·진성준·김용익·김진표·원혜영·한정애·추미애·배기운·이찬열·장하나·최민희·한명숙·진선미·임수경·전순옥·김재윤·박남춘·안규백·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3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박병석·김기준·박민수·강기정·이원욱·정세균·홍익표·은수미·김성주·이미경·임수경·박주선·권성동 의원 발의)(계속)

3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 의원 대표 발의)(백군기·김광진·윤후덕·황주홍·김세연·송영근·우원식·이인영·안규백·김춘진·한정애·權垠希 의원 발의)
4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황주홍·이종훈·서용교·나성린·양창영·이완영·최봉홍·김상민·김종태 의원 발의)
41.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양창영·이철우·송영근·유승우·박주선·박홍근·김태흠·김운덕·이한성·박남춘·문병호·김제식·김상훈·김학용 의원 발의)
42.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이완영·양창영·이종훈·나성린·최봉홍·서용교·권성동·김상민·강석호 의원 발의)
43.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나성린·양창영·최봉홍·서용교·김종태·이완영·이자스민·김상민·이종훈·한정애·김용남·심상정·이인영·권성동 의원 발의)
4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김기준·박민수·이개호·이인영·이학영·장하나·정성호·최동익·한정애 의원 발의)
4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7.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7시23분)

○위원장 이상민 환노위에서 회부해 온 법안으로서 전체회의에 계류된 법률안 2건과 미상정 법률안 1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의사일정 제37항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타위법인 아직 미상

정된 법률안, 39항 백군기 의원 대표발의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 40항 주영순 의원 대표발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항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2항 주영순 의원 대표발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3항 주영순 의원 대표발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안입니다.

정부 측 법안이 뭔지도 여기에 적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적기가 안 되어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이것 최종안 할 때 시나리오를 한번 더 검토를 하세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너무 복잡해. 이것 정리해서 하라……

44항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5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항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8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항 정부 제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0항 정부 제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상 1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부안 아닌 다른 법률안들은 서면으로 같음토록 하고 49·50항 정부가 제출한 각 법률안은 장 관계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이상 1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환경부장관 윤성규 환경부장관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의 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4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대기, 물, 토양 등 매체별 오염관리제도를 과학적·선진적 통합관리방식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입니다. 환경 영향이 큰 사업장에서는 앞으로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이 적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음이 검증되었을 때에만 최적가용기법의 적용하에 오염배출시설 설치를

허가하게 됩니다.

허가 이후 운영과정에서도 주변 환경의 변화, 과학기술의 진보 등에 비추어 허가사항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환경 관리가 적정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각종 계획이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입각하여 친환경적으로 수립 시행되도록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을 입안단계에서부터 연계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상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은 전문가, 이해당사자, 관계부처가 충분히 논의하여 마련된 것이니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잠깐요. 여야 간사 사이에 당초 오늘은 2시부터 시작해서 6시 전에 끝내기로 합의했고, 지금 두 간사의 요청에 따라서 여기까지만 심의하고,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지요? 하자는 의견이에요.

수석전문위원은 이후 기관들에 대해서 그와 같은 취지를 말씀하시고, 기다리셨을 텐데 다음 주에 하는 걸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그다음 부처가 어디인가요? 외교부, 통일부하고 교문위 법이니까 교육부인데 양해말씀을 좀 드리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37항·38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이미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건 법률안에 대해서만 강남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남일** 의사일정 제39항부터 50항까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48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변경신고에 관한 간주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일부 수식 문구를 삭제하고 자구 수정을 하는 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검토 결과 민관협력단체를 ‘거버넌스’로 약칭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불필요한 개념 사용으로 보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한 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안은 검토 결과 국유재산의 특례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이 아니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22조의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 외에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 표시·광고 행위 모두를 형사처벌하는 현행법 제34조제3호가 범법자 양산의 위험이 있어 처벌에 앞서 시정 기회를 주는 취지에서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항을 도입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부당 표시·광고 행위로 처벌받는 외에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벌도 받게 되어 더 가혹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관한 법 제16조의10을 포함한 현행 규정과 개정안을 함께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에 관한 기준과 검사방법에 관한 것으로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검토 결과 부칙의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활악취 개념의 혼선 방지를 위해 문구를 조정하는 등 일부 문구 수정 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49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토 결과 시행일을 통일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안 부칙 제1조를 수정하는 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50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는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통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법률안 부칙 제1조는 법 시행일을 2017년 1월 1일 이후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포괄위임입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시행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의사일정 37항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또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의견을 냈었는데 이게 계속 지금 계류 중에……

○위원장 이상민 37항이요?

○김진태 위원 예, 최저임금법이요.

그래서 그때 낸 얘기 중에 관련되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도 연계해서 개정돼야 하는데 하등 다른 진전 사항이 없고, 기타 그때 얘기했던 생활임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에서 좀 더 논의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임내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강남일 위원도 지적했고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할 때도 44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위원장 이상민 44항이요?

○임내현 위원 예.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기 했듯이 원래 부당 표시·광고 행위 이걸 형사처벌한 걸 그대로 두면서 또 경미한 것은 형사처벌을 적게 한다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하고 그걸 불이행한 것을 이렇게 처벌하는 걸 두면서 전에 걸 그대로 두게 되면, 이걸 정리를 안 하면 이중으로 처벌된다거나 그런 게 있어서 2소위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상민 2소위로요, 44항.

다른 위원님.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37항 최저임금법 관련해서요.

장관께서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환노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환노위 통과했습니다.

○전해철 위원 장관님, 이 법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는 말 그대로 헌법 32조에 있는 ‘국가가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그 부분을 최저임금법에 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자치단체 등이, 현재 반드시 지켜야 될 임금은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과 다른 어떤 생활임금이나 임금을 정해 놓고 그걸 규제적으로 입찰에, 그게 일정하게 정한 임금이 되지 못하면 입찰을 못 하게 한다든지 또는 가점을 준다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른 규율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사회가 자치단체별로…… 국가가 자치단체별로 어디는 최저임금, 어디는 생활임금 이렇게 규율에 혼란이 올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라고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개정안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게 작동되게 해서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효성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그걸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어떻게 보면 재량 범위를 주고 있는 것도 있어서 이 정도의 규정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환노위에서 여야 합의로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장관께서 단서조항을 달든지 해서 해석을 달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환노위에서 충분히 구현을 해서 합의가 안 되게 해야 되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이 최저임금법이 그냥 통과된 게

아니라 뒤에 고용보험법 등등 여러 법과 연계돼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노위에서 통과되게 다 이야기해 놓고 법사위에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셔서 가지고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환노위 통과……

○**전해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구에 대한 문리해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강제조항이 아니고 ‘국가와 지자체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구체적인 해석에 의해서 실현 여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환노위에서 통과된 거고, 그걸 장관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환노위 의결할 때도 지금처럼 2개의 기준으로 작동되는 것은 우리 법체계에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위에서 의결된 뒤로 언론을 통해서 나온 부분은 이 부분이 마치 생활임금화돼서 이중으로 2개의 작동이 가능한 것처럼 해석도 되고 있어서 그것은 자칫하면 우리의 최저임금 체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이지 이 개정 조항 자체에 대해서 반대는 아니다 이 말씀이예요? 그렇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게 작동될 소지가 현실적으로 꽤 많이 있어서……

○**전해철 위원** 아니, 간명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 개정 조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김도읍 위원**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전해철 위원** 답을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이 조항이 지방재정법 등등에 규정되어 있는 어떤 위반의 소지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 일선에서 어디 자치단체는 최저임금으로, 어디는 그 이상의 부분을 강제적으로 규율하고 작동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장관님, 제가 취지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안 6조2항에 있는 이 조문에 대해서 반대,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냐고요, 주무장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중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전해철 위원** 그러면 어떡해요? 그것은 실제 그 개정안대로 하면서 그걸 집행하고 적용할 때 그렇게 하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전해철 위원** 위원장님, 저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노위에서 이미 다 논의했고 지금 장관께서 이야기한 대로 그런 우려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환노위에서 넘어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군다나 이게 강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다면 헌법의 원칙이나 기존의 법하고 충돌돼서 법사위에서 심사할 수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이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근거조항 정도를 두고 있는 것을, 지금 법사위에서 생활임금 또는 다른 이론과 다른 이념에 의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또 다수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어서 오늘은……

뒤에 정부에서 사실상 통과하려고 하는 고용보험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실업크레딧 제도여 가지고 굉장히 빨리 통과를 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연계도 하다가 이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통과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까 우려했던 것은 김진태 위원님이나 그런 부분을 소수의견으로 해서 오늘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어떡세요?

이한성 위원님.

○**이한성 위원** 이한성 위원입니다.

두 분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노동부장관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전해철 위원님께서도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고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최저임금법의 시행을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다소 문구가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은 또 소위에서 차분하게 잘 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성급하게 환노위를 통과했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새누리당과 정부, 엇그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호소를 하고 가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관광진흥법 그게 그렇게 참 다급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에서 관광객

이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법적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걸림돌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 통과에 협조해 준다는 그런 약속 때문에 아마 이게 성급하게 같이 연계해서 그때 환노위를 통과한 걸로 저는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통과된 뒤에 딱 그냥 약속을 어기고 관광진흥법은 지금 수년째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대단히 정략적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통과되고 이것도 통과되고, 특히 지금 다급한 게 최저임금법이 관광진흥법하고 연계돼 있는 관계로, 그것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특히 다급한 고용보험법도 같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엇갈려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대단히 아쉽고, 새누리당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강조를 하셨고, 관광진흥법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정말 개탄스럽고 왜 거기서 그렇게 안 해 주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면 다 관광진흥법과 함께 건전하게 전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여기 없으신가요?

그러면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장관님,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약 4월부터 시작을 해서 노사 공익위원들이 각각 9명씩 의결해서 정부에 오면 그걸 정부가 이견이 없으면 존중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지금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보면 소위 생활임금은 어떻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 개정안에는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은 없고 적정임금으로 돼 있는데……

○김도읍 위원 적정임금으로 돼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 방식이나 이런 부분은 규율이 없습니다.

○김도읍 위원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특별히 규율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도읍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특별히 규율은 없습니다.

○김도읍 위원 뒤에 실무자……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임금제도를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안 돼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뒤에 정하는 절차는 저희들이 안……

지금 김경협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 자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도읍 위원 조례로 정하게 돼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삭제하고 통과됐습니다.

○김도읍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주체가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소위 말하는 속칭 ‘생활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김도읍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개정안이 나온 이후에 서울 금천구입니까? 거기 구청장께서 칠천몇백 원으로…… 제가 한번 볼까요, 소위 말하는 생활임금을 내년도에 7239원, 최저임금 6030원보다도 1200원 많네요. 이렇게 결정하고 고시했다. 고시하고, 그다음에 이걸 ‘금천구는 앞으로 민간위탁이라든지 구청 발주 공사라든지 용역에 단계별로 확대 적용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장관님 말씀하신 게 그런 겁니다. 지자체에서 공사 발주를 하거나 용역을 하거나 할 때는 대규모 공사도 있고 용역도 있고 하겠지만 소규모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하지만 영세한 그런 업체들이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는 있지만 소위 말하는 적정임금 보장을 못 해서 공사 수주를 못 하거나 용역 수주를 못 한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함께 사는 그런 모토하고는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영세한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제 생각일 뿐입니까, 장관님?

그래서 이중의 기준으로 임금체계가 작동해서는 안 된다, 불합리성이 있다, 이 이야기하고 그 근거로 이러한 사례들이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자치단체가 자기 소속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전체 최저임금 체계가 어디는 최저임금으로, 어디는 다른 임금으로 완전히 규제적 요소로 작동하는 것은 혼란이 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제가 환노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게요, 오히려 여유가 있는 큰 기업들은 공사나 용역에 있어서 이득을 볼 수가 있고 여유가 없는 영세한 업체들은 앞으로 지자체에서 국가가 정하는 최저임금 보장은 하고 있더라도 지자체가 정해 놓은 소위 말하는 생활임금을 도저히 드리지 못해서 오히려 관급공사나 용역을 못 받는 이러한 불합리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안 연계는 제가 상당히 말하기조차도 꺼려하는 건데 지금 우리의 정치 상황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연계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관광진흥법을 2013년 1월 달에 발의해 놓았습니다, 개정안을. 이게 경제활성화법이라 해 가지고 모든 법하고 묶여 가지고 지금 거의 3년째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관광진흥법은 지난 3월 2일 날 이 고용보험법하고 최저임금법하고 같이 연계하기로 여야가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도 참고해서 소위에서 다시 회의……

○위원장 이상민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이트 노동자나 공무원들이 최소의 생활임금…… 최저임금으로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생활임금으로 하고 나니까 이제 약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 우리는 상당히 많은 임금을 갖고 있는데 너무 등급을 나눠서 임금들이 차별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해야만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바뀌야 되거든요. 바뀌 나가야 되는데 ‘생활임금을 하도록 노력한다’라고 하는 게 뭐 그

리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슈화하고 잘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줘야 되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여야가 합의했고 또 다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바뀌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의미 있게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가지고 연계하고 말고 할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상민 양 간사님, 어떻게 정리할까요?

지금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고 지난번에 37·38항이 서로 연계 합의처리가 안 돼서 전체회의에 계류시켰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해철 위원 법사위에서 37·38 같이 합시다.

○김도읍 위원 관광진흥법 지금 3년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 저쪽……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요. 연계 합의해 놓고 그것만 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전해철 위원 전체회의에 놔두고 다음 상임위 때 다시 한 번……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37·38항은 전체회의에서 하고, 다음 주에 있으니까 양 간사께서 노력하셔서……

○서영교 위원 그러시지요.

○이한성 위원 관광진흥법을 전해철 간사님……

○전해철 위원 모든 법을 연계하려고 하지 마시고 관련 있는 환노위 법하고……

○김도읍 위원 3월 2날 합의된 거예요, 연계해 갖고.

○위원장 이상민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계시고 그다음에 윤성규 환경부장관님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37항, 38항은 다음 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타결을 목표로 노력을 해 주시고 계류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3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이상민 39항.

○김도읍 위원 37항은 제가 아까 마이크가 꺼지면서 말을 마무리를 못 했는데요.

○위원장 이상민 1분 드릴까요?

○김도읍 위원 예.

37항은 전체회의보다 저 소수의견을 달아 주십시오, 소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상민 예, 지금 의견에 소위……

김진태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시지요?

○김진태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소위에 회부하자는 두 분의 소수의견을 부기하고 전체회의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3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40항·41항·42항·43·44·45·46·47·48·49·50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임내현 위원 44항은 제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40·41·42·43·45·46·47·48·49·50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전문위원은 50항에 대해서 신중한 의견이지만 위원님들, 그냥 원안대로 가결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9항과 5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임내현 위원 수정……

○위원장 이상민 아니, 44항은 좀 이따 드린다고요.

39항·5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40항·41항·42항·43항·45항·46항·47항·48항·49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2소위에……

○임내현 위원 조금 보충해서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2소위……

○전해철 위원 저도 2소위에, 44항은 저도 2소위……

○위원장 이상민 예, 2소위 가서……

○임내현 위원 수정하면 그냥……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건……

○임내현 위원 2소위 가서?

○위원장 이상민 예.

2소위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해철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의결만 했나 좀 보고요.

예, 됐습니다.

○전해철 위원 의결했는데요, 이것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놓쳤는데, 50항 그거 한번 보시지요.

전문위원 이야기는 이게 포괄위임입법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 이걸 심각하게 지적했는데 이걸 수정의결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50항.

○이한성 위원 여기에서 수정할 수 있나요?

○전해철 위원 50항.

○이한성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정할 수 있는가?

○전해철 위원 아니아니, 그래서 2소위로 가서 이렇게 할게요. 보니까 강남일 전문위원이 좀 심각한 위법을 지적해 냈는데……

○위원장 이상민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저도 50항을, 이걸 테크닉적인 부분일 테니까 소위에서 다듬어서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그러면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39항만……

○김진태 위원 아니, 잠깐만요.

50항이, 전문위원이 지금 단계에서 수정의견을 낸 거 아닌가요?

○전해철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상민 수정의견 냈나요, 전문위원?

○**김진태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50항?

○**전해철 위원** 안 냈어요.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50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 줘 보시지요, 의견을 명확하게.

○**전문위원 강남일** 50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부칙, 이것이 제정 법률안입니다.

이 제정 법률안 부칙 제1조를 보시면 시행일을 2017년 1월 1일 이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업종이 먼저, 시행이 언제부터 될지 불명확합니다.

이것을 대통령령에 무작정 위임해 놓을 것이 아니라 제가 검토한 바로는 어느 정도 카테고리 정해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업종, 영업의 종류에 따라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대강이라도 정해 놓는 것이 포괄위임입법에 어긋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김진태 위원** 지금 그러면 그런 것은 그때로부터 몇 년…… 지금 5년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강남일** 예, 2017년 1월 1일 이후 5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좀 불명확하니까 그러면 2017년 1월 1일로 그냥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장님, 환경부장관이 잠깐 말씀 올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상민** 예, 환경부장관님 말씀하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전문위원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그동안 법사위에 온 다음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전문가들하고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진태 위원님 말씀대로 부칙은 그냥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끊고 제6조에 가면 통합허가에 대해서 1항에 있는데 1항의 단서로 ‘이 경우 업종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본문에서 집어넣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안으로 보고드릴까……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도 업종의 범위를 대강이라도 정하여야 포

괄적 위임이 안 되는데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비상황에 따라서 업종을 추후 단계적으로 정한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포괄적 위임이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책적인 측면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대강이라도 범위를 정하면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쉽게 풀리는 문제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들이 20개 업종을 지금 상정하고 있어서요, 예시로 한두 개 업종을 열거를 할 수 있는데 20개 업종을 다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업종별로 대개 2~3년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계속 같이 준비해도……

○**김진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지금 우리가 의결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50항에 대해서 의결을 했는데, 의결하고 방망이를 두드리고 조금 이따가 ‘그것은 말 못 했는데 다시 이것은 수정해 주세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의결이라는 게 그렇게……

만약에 정말 수정을 할 때는 진짜 뭔가 착오가 있다거나 아주 명백한,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 있는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도 전부 합의하에 한다고 그러면 모를까……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두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또 논의를 한다고 그러면, 법사위 운영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몇 가지 이것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법률안으로서의 오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애초에 의결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요, 전문위원이 보고를 한 다음에 이후에 다시 위원장님이 의결을 하려고 하니까 전문위원이 또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신중 의견인데 이것 괜찮겠습니까?’라고 해서 제가 환기를 해서 다시 본 것이지요. 보고 있을 때 위원장님이 의결을 하니까…… 제가 중간에 손을 들었는데 의결하고 하자고 하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이 1차 보고를 하고 의결 직전에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신중 의견인데 위원님들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보니까, 실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법사위에 대한 것이잖아요? 포괄입법이고 지금 환경부장관이 이야기 하는 것도 보면, 유형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부득이하게 그대로 가더라도 한 번 더 이걸 볼 수가 있어서……

의결된 것을 다시 수정하는 거야, 그것이야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말고 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충분히 참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민 이한성 위원님.

○이한성 위원 그런데 이것을 업종별로 정하는 것은…… 이것이 포괄위임인가 하는 게 좀 근본적으로, 법리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책상으로, 어떤 업종별로 시행시기를 국가재정 사정이나 또 기술기반 사정 이런 것을 감안해서 스무 가지나 되는 것을 갖다가 조문에다 다 나열하기가 어렵고 이것이 과연 포괄위임을 위반하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대안으로 제시한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냥 의결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사람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어쨌든 제가 이것을 전부 다 파악해서 정리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저도 꼬였어요. 그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 원만치 않은 거고. 아주 쟁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인데 어쨌든 김진태 위원님의…… 제가 사회자로서 의결절차를 종결한 것은 또 틀림없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전 위원이 동의하시면 다시 수정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진태 위원님이나 이한성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니, 위원장로서는 일단 종결처리 한 것을 동의를 안 하는데 다시 또 회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소위를 가더라도 입법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하고 간사 사이에 위임을 해 주시면 정부 측, 환경부하고 의논을 해서 입법기술적으로 가능한 취지 내에서 포괄수임이나 명확성의 원칙에 맞게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두 간사에게 맡겨 주시면, 위임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근본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전제하에?

○김도읍 위원 법안심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면 처리가 안 되는 것이지요.

김진태 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어차피 새누리당을 대표하는 이한성 위원이 계시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김진태 위원 간사님도 포괄위임을 하나씩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부칙 정도는 우리가 양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 다시 돌려 가지고……

○전해철 위원 부칙 조항만 말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니까요. 그걸 통틀어서 위배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더 보완할지 안 할지를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취지에 반하지 않게끔 해 드릴게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항은 원안대로 의결, 아까 한 것을 전제하에 다소 입법기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전제하에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를 해서 다듬을 부분이 있다면 위임해 주실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37항·38항 계류시키고, 다음 주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렇게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리했습니다.

환경부장관님하고 고용노동부장관님, 노고 많으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노고 많으셨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앉으시지요.

사무총장님, 10항 공직선거법안에 대해서 아까 인터넷 실명제 논란이 됐지 않았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위원장 이상민 그게 각 당의 입장이 부딪칩니다. 그러니까 한참 기다리셨는데 지금 어차피 위원님들이 자리를 비우세요, 정족수도 못 채우고.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다음 주, 11월 3일 날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돼 있는 11월 5일 본회의에, 통과는 그 안까지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요.

하여튼 양당의 간사께서는 각 당의 입장 정리와 또 타결 노력을, 다음 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하여튼 11월 5일 날 통과를, 위원장으로서도 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제가 아까 언성 높인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아니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노고들 많으셨습니다.

부총리님, 잠깐만 앉으시지요.

부총리님, 제가 웬만하면 한참 기다리셔 가지고 통일부나 교육부 부총리님을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정족수를 못 채우는데, 양당의 간사께서 도저히 성원이 안 돼서 그냥 공전될 수가 있으니까…… 다음 주 3일 날 예정돼 있거든요. 제가 1순위로 올려 드릴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런데 이게 교육법이라 빨리 해 주셔야 돼요. 교육에 대한 지원법들이라……

○이한성 위원 일주일 안에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11월 3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1번으로.

○위원장 이상민 예, 1번으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감사합니다.

벌써 몇 달째 저거 돼 가지고……

○위원장 이상민 하여튼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모두들 노고 많으셨고요, 다 노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이 상 민 이 춘 석 이 한 성 임 내 현
전 해 철 정 갑 윤 홍 일 표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남 궁 석
전 문 위 원 임 재 주
전 문 위 원 강 남 일
전 문 위 원 심 태 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 우 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양 희
법 무 부 차 관 김 주 현
환 경 부 장 관 윤 성 규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기 권
여 성 가 족 부 장 관 김 희 정
법 제 처 장 제 정 부
감 사 원 장 황 찬 현
방 송 통 신 위 원 장 최 성 준
원 자 력 안 전 위 원 장 이 은 철
특 별 감 찰 관 이 석 수
우 정 사 업 본 부 장 이 병 철
경 영 기 획 실 장

○법원측 참석자

법 원 행 정 처 장 박 병 대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사 무 처 장 김 용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 무 총 장 김 용 희

○출석 위원(15인)

김 도 읍 김 진 태 노 철 래 박 지 원
서 기 호 서 영 교 우 윤 근 이 병 석